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2009. 5. 21, 법률 제9675호) 및 동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827호)이 2009.11.22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안 제1조)
  - 법 적용조항 『제17조(종전)』 삭제 : 도 협의회 심의사항
- 나. 소방서장, 재향군인회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원 수 조정(안 제2조 )
  -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 10명 이상 26명 이하로(1명 증원)
- 다.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호, 안 제5조)
  - 협의회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 대비책” 삭제(도 협의회 심의사항)
- 라. 지원본부의 조직을 8개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
  -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10.07.21~’10.8.10(20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0인이상 25인이하”를 “10명 이상 26명 이하”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창소방서장
5. 제1670부대 1·3대대장
6.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7. 국가정보원 관계관
8. 평창군 재향군인회장
9.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2조제5항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9호”로 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평창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 따른 평창군 민방위협의회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편성하며”로 하고, “4인 이상 9인 이하”를 “4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b>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b>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평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b>10인 이상 25인이하로</b> 구성 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670부대 1·3 대대장</u></p> <p>5. <u>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u></p> <p>6. <u>국가정보원 관계자</u></p> <p>7. <u>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 ④(생략)</p> <p>⑤ <u>제2항제7호</u>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 <u>제5조 및 제9조에 따라</u> -----  -----  -----  -----.</p>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u>10명 이상 26명 이하로</u> -----  -----  -----.</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평창소방서장</u></p> <p>5. <u>제1670부대 1·3대대장</u></p> <p>6. <u>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u></p> <p>7. <u>국가정보원 관계관</u></p> <p>8. <u>평창군 재향군인회장</u></p> <p>9. <u>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u></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⑤ <u>제2항제9호</u>-----  -----.</p> <p>⑥ <u>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u></p> <p>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 2항에 따른 평창군 방위협의회</p> <p>2. 「민방위기본법」 제7조 따른 평창군</p>

민방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심의 사항) 법 제5조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 6.(생략)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평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 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 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 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 방위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협의회의 심의 사항) -----  
-----  
-----.

<삭 제>

2 ~ 6.(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편성하며, -----  
-----  
-----  
-----4명  
이상 9명 이하-----.

<삭 제>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8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 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4 (방위협의회) ①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과 직장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1984·7·9, 1986·12·23, 1999.6.30, 2009.11.30>

### 『민방위 기본법』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